

JP모간 중남미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 보 고 서

제 1 기 : 2007년 9월 5일부터 2008년 9월 4일까지

안진회계법인

목 차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JP모간 중남미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

수익자 및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JP모간 중남미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의 2008년 9월 4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JP모간 중남미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의 2008년 9월 4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용성과 그리고 자본의 변동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본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일부로서 투자신탁의 운용과 관련된 법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질문 및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관련법규 등의 위배사항과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승우

2008년 10월 7일



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08년 10월 7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투자신탁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 차 대 조 표

제 1 기 2008년 9월 4일 현재

JP모간 증남미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 호

(단위 : 원)

과 목	제 1 기	
자 산		
I. 운용자산		86,620,635,773
(1) 현금및예치금	(470,117,432)	
1. 예치금	470,117,432	
(2) 유가증권	(86,150,518,341)	
1. 수익증권(주석2,3)	86,150,518,341	
II. 기타자산		1,008,386,341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008,147,916	
2. 미수이자(주석2)	238,425	
자 산 총 계		87,629,022,114
부 채		
I. 기타부채		1,056,991,799
1. 해지미지급금	581,094,105	
2. 미지급수탁회사보수(주석4)	14,399,897	
3. 미지급판매회사보수(주석4)	250,270,188	
4. 미지급자산운용회사보수(주석4)	203,997,408	
5. 미지급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주석4)	4,800,021	
6. 미지급감사인보수	2,200,000	
7. 미지급예탁결제수수료	230,180	
부 채 총 계		1,056,991,799
자 본		
I. 원본(주석5)		95,166,561,357
II. 결손금(주석9)		(-)(8,594,531,042)
(총좌수 : 95,166,561,357좌)		
(천좌당기준가격 : 909.69원)		
자 본 총 계		86,572,030,31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7,629,022,114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손익계산서

제 1 기 2007년 9월 5일부터 2008년 9월 4일까지

JP모간 중남미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 호

(단위 : 원)

과 목	제 1 기	
I. 운 용 수 익		(-)16,840,710,368
(1) 투 자 수 익	(51,889,298)	
1. 이자수익(주식2)	20,569,360	
2. 환매수수료수익(주식7)	31,319,938	
(2) 매매차익	(5,003,157,321)	
1. 수익증권매매차익(주식2)	5,003,157,321	
(3) 매매차손	(21,895,756,987)	
1. 수익증권매매차손(주식2)	21,895,756,987	
II. 운 용 비 용		1,634,909,177
1. 수탁회사보수(주식4)	49,622,125	
2. 판매회사보수(주식4)	853,821,925	
3. 자산운용회사보수(주식4)	702,980,18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주식4)	16,540,704	
5. 감사인보수	2,200,000	
6. 예탁결제수수료	1,937,100	
7. 기타공통비용	7,807,140	
III. 당기순손실(I-II)		(-)18,475,619,545
IV. 친좌당순손실(주식8)		(-)238.39원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 참조

자 본 변 동 표

제 1 기 2007년 9월 5일부터 2008년 9월 4일까지

JP모간 중남미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 호

(단위 : 원)

구 분	원 본	결 손 금	총 계
I. 기초금액(2007년 9월 5일)	-		-
1. 추가모집	122,203,823,642		122,203,823,642
2. 해지환급액	(-)27,037,262,285		(-)27,037,262,285
3. 당기순손실		(-)18,475,619,545	(-)18,475,619,545
4. 설정조정금		12,121,955,487	12,121,955,487
5. 해지조정금		(-)2,240,866,984	(-)2,240,866,984
6. 현금분배금(주식6) (총좌수 : 95,166,561,357좌) (천좌당기준가격 : 909.69원)		-	-
II. 기말금액(2008년 9월 4일)	95,166,561,357	(-)8,594,531,042	86,572,030,315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 참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 기 : 2007년 9월 5일부터 2008년 9월 4일까지

JP모간 중남미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

1. 투자신탁의 개요

JP모간 중남미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이하 '투자신탁')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2007년 9월 5일에 설정되었으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동 투자신탁은 중남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중남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중남미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환율변동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투자신탁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수탁회사는 각각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5개사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투자신탁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증권의 평가

수익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간접투자기구의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수익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나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수익증권은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증권 평가로 인한 손익은 수익증권매매차익 또는 수익증권매매차손의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의 인식기준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상하되 회수가 가능한 부분만을 인식하고 있으며, 발행이자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 등

신탁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하여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으며, 수익자에 대한 이익분배금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만 있습니다.

(4) 회계기간

신탁약관 제12조에 의거 회계결산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5) 설정조정금 / 해지조정금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금액을 산출하고 이중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본에서 가감하며, 추가설정 또는 중도해지금액에서 원본해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설정조정금 또는 해지조정금 과목으로 처리하여 이익잉여금(결손금)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6) 현금흐름표의 작성생략

대부분의 운용자산이 유동성이 매우 크고 공정가치로 평가되어 있으며 부채가 중요하지 않아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3. 수익증권

당기말 현재 수익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수익증권명	수량(좌)	취득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JP 모간 증남미 주식형 모투자신탁	92,945,246,116	98,089,719,340	86,150,518,341

4. 보 수

신탁약관 제40조에 따라 투자신탁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 중 당기말 현재 미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계정과목	지 급 처	금 액
미지급수탁회사보수	주식회사 국민은행	14,399,897
미지급판매회사보수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5개사	250,270,188
미지급자산운용회사보수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	203,997,408
미지급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HSBC펀드서비스주식회사	4,800,021
		473,467,514

- (1) 투자신탁은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수탁회사보수로서 보수계산 기간 중 종류별 수익증권(Class A, Class C, Class C1, Class C2, Class C-F, Class C-W, Class C-E)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에 연 0.06%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수계산기간(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의 종료시,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또는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2) 투자신탁은 신탁약관에 의거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5개사에 판매회사보수로서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에 Class A 수익증권은 0.873%, Class C 수익증권은 1.773%, Class C1 수익증권은 1.596%, Class C2 수익증권은 1.419%, Class C-F 수익증권은 0.04%, Class C-W 수익증권은 0.00% 및 Class C-E 수익증권은 1.419%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수계산기간(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의 종료시,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또는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Class A 수익증권의 경우 납입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선취판매수수료를 판매시점에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 (3) 투자신탁은 신탁약관에 의거 자산운용회사인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에 자산운용회사보수로서 보수계산기간 중 종류별 수익증권(Class A, Class C, Class C1, Class C2, Class C-F, Class C-W, Class C-E)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에 0.8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수계산기간(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의 종료시,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또는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4) 투자신탁은 신탁약관에 의거 일반사무관리회사인 HSBC펀드서비스주식회사에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서 보수계산 기간 중 종류별 수익증권(Class A, Class C, Class C1, Class C2, Class C-F, Class C-W, Class C-E)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에 연 0.0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수계산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간(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의 종료시,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또는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원 본

당기말 현재 총좌수는 95,166,561,357좌(Class A 수익증권 75,245,998,879좌, Class C 수익증권 17,951,365,203좌, Class C-E 수익증권 1,969,197,275좌)이며, 1,000좌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로 원본은 95,166,561,357원(Class A 수익증권 75,245,998,879원, Class C 수익증권 17,951,365,203원, Class C-E 수익증권 1,969,197,275원)입니다.

6. 분배금

신탁약관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손으로 인하여 당기말 현재 분배금은 없습니다(단위:원).

	금액
Class A 수익증권	(-)6,689,952,662
Class C 수익증권	(-)1,723,869,142
Class C-E 수익증권	(-)180,709,238
분배가능금액	(-)8,594,531,042
이월결손금	(-)8,594,531,042
분배금	-

7. 환매수수료

신탁약관 제 21조에 의거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에 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하고 환매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보유한 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이익금의 70% (Class A 수익증권은 30일 미만일 경우 이익금의 10%)를 부과하며 당기 중 발생한 환매수수료는 31,319,938원입니다.

8. 천좌당순손실

당기말 현재 천좌당순손실의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금액
당기순손실	(-)18,475,619,545
가중평균좌수	77,500,421 천좌
천좌당순손실	(-)238.39

9. 천좌당 기준가격

당기말 현재 천좌당 기준가격의 계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과 목	금액
I. 대차대조표자산총액	87,629,022,114
II. 대차대조표부채총액	1,056,991,799
III. 신탁재산순자산총액	86,572,030,315
IV. 수익증권 총 좌수	95,166,561,357
V. 수익증권 천좌당 기준가격	909.69

10. 과세소득

당기 중 투자신탁의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구분	금액
당기순손실	(-)18,475,619,545
설정·해지조정금	9,881,088,503
분배가능금액	(-)8,594,531,042
차감:비과세대상소득	(-)11,829,584,811
과세대상소득	3,235,053,769